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62
----------	------

2025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4월 28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
- 현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25.8.2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시설물 운영·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 시설규모 : 대지 11,189.40 m^2 , 건물 39,262.5 m^2 (지하4층, 지상8층)

○ 지원시설 :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

○ 개원일자 : 2011년 5월



- 종별 : 종합병원
- 층고 : 지하4층, 지상8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재활의학센터 등
- 병동부 :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 의료정보통합시스템 : EMR, PACS, OCS

마. 민간위탁기간

- 2025년 8월 27일 ~ 2030년 8월 26일(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8,955,570천원('25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본예산, 천원)

구 분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
합 계	11,458,272	8,955,570
민간위탁금	8,894,174	4,889,463
공공의료 손실보전	8,132,418	3,635,000
건강돌봄 네트워크	425,756	454,463
셔틀버스 운영	300,000	300,000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리스	-	500,000
노후설비부속교체	36,000	-
민간위탁사업비	2,564,098	4,066,107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	980,038	2,597,844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	670,000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	274,230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	124,033
디스플레이 설치	-	400,000
식당 노후환경개선 공사	167,500	-
입원환자용 냉장고 교체	22,000	-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1,374,560	-
노후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교체	20,000	-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2384, '25.3.7.) : 적정(권고)

- (권고내용)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 (대 책)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시, 고용유지·승계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 고용유지·승계 정도 80% 이상 의무
 -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기준,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이숙종 (☎ 2133-9248)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제4차 ‘재위탁’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서울의료원)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5년) 만료 시기가 ‘25년 8월 26일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 4차 재위탁: ’20. 8. 27. ~ ’25. 8. 26. (5년)
- 이번 제33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립병원 조례”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¹⁾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1) ‘병원사무’가 아닌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수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던 (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2020. 7. 16. 동 조례 개정으로 현행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으로 ‘항 번호’가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단서도 ‘제11조제2항’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11조제3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민간위탁은 최초 위탁 시부터 '재위탁(공모)'방식만으로 추진되어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25 에 따라, '재위탁'이 아닌 '1회에 한해' 동일 수탁기관과 '재계약(보고)'로 추진될 여지가 존재하였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 계약) ③ 재 계약은 1회 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지침」 (p.25) ('24.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재계약 1회로 제한 ('24.4.5. 시행)

- 그러나, 동 사무는 4년간의 시립병원 평가 평균 점수는 82.3점이나, 직전 연도인 2024년 시립병원 평가에서 72.4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추진되었음.

연도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점수	90.7점	81.2점	84.9점	72.4점	82.3점

필요적 재위탁 공모 (재계약 배제) 사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8))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별도의 평가'로 대체가 가능함. 그리고 이에 따라 '시립병원 민간위탁'의 경우는 '종합성과평가'를 「시립병원 조례」 제22조의 '시립병원 성과평가'로 대체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 (1) '최종평가점수'가 '민간위탁 총 5년간²⁾ 또는 총 4년간'의 '시립병원 평가의 평균 점수'인지 아니면 (2) '동의안 제출 바로 직전 연도 평가점수'인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시) 과거 23년 보라매병원 및 백암정신병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집행기관이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대체 종합 성과평가'는 직전 연도인 2022년 시립병원 평가이었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정보 참조)
- 아울러, '평가 체계 및 평가 방식'이 현저히 다른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와 '시립병원 사무 성과평가'를 '가중치'나 '보정'없이 절대 평가 점수인 '75점'을 기준으로 '필요적 재계약 배제'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가 필요함.

2) 현실적인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점 및 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 5년이 아닌 4년간 평균 점수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2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경위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3년 ('11.5.27.~'14.5.26.)	이화학당	공개모집	
	3개월('14.5.27.~'14.8.26.)	이화학당	협약연장	재위탁 유찰로 연장
2차 위탁	3년 ('14.8.27.~'17.8.26.)	이화학당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3차 위탁	3년 ('17.8.27.~'20.8.26.)	서울의료원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4차 위탁	5년 ('20.8.27.~'25.8.26.)	서울의료원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유형 : 시설형 (재위탁)
- 위탁기간 (예정) : 5년 ('25. 8. 27. ~ '30. 8. 26.)
- 소요예산 ('25년) : 8,955,570천원³⁾

연 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5년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 4,889,463천원 - 공공의료 손실 보전 = 3,635,000천원 - 건강돌봄 네트워크 = 454,463천원 -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 = 300,000천원 - 의료장비(CT) 리스 = 500,000천원
	민간위탁금 사업비	○ 민간위탁금 사업비 = 4,066,107천원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 2,597,844천원 -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 670,000천원 -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 274,230천원 -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 124,033천원 - 디스플레이 설치 = 400,000천원

3) '24년 대비 '25년 공공 손실보전은 4,497,418천원(약 44억원) 감액되었고, 향후 재난관리기금 활용하여 추가 지원 예정
(출처 :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p.867)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권고)**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서울특별시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공모 예정 (現 서울의료원)	5년	적정 (권고)

- (권고)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장이 민간에 재위탁(공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인 위탁사무

-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시설물 운영·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 동 사무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운영 사무”(시립병원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로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함.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5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및 보건 사무라는 점에서, 서울시 직영, 자치구 위임, 용역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의 의료 자원을 위탁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민간위탁근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마목(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자치사무 근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치사무’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존재함에 따라, 동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전에 거쳐야하는 필수적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동 사무에 대해 ‘적정(권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 (권고의견)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 따라서, 집행기관은 향후 재위탁(공모) 추진 과정에서 기존 수탁기관이 아닌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p.90)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 12. 4.)」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탁법인 노동자 80% 이상의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준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동시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진료 인력 및 진료 서비스 질’의 유지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p.90 〉

02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2.1 고용승계

고용승계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특별한 사정의 예시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인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예 : 민간대체인력뱅크,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노동자(예 :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서울의료원)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5년) 만료 시기가 ’25년 8월 26일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이번 제330회 임시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다만, 동 민간위탁은 ‘재위탁’이 아닌 ‘1회’에 한해 동일 수탁기관과 ‘재계약 (보고)’로 추진될 여지가 존재하였으나, 2024년 시립병원 평가에서 72.4 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추진되었음.
- 동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사무’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임에 따라 ‘민간 의료 영역’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해 추진이 필요한 사무라 판단됨. 아울러, 동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명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사료됨.

붙임 1

- 산출근거

「민간위탁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공의료손실보전	8,507,000	7,927,000	8,269,296	8,132,418	3,635,000

▶ 건강돌봄 네트워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454,463	
인건비	318,083	· 간호사(4명), 사회복지사(2명)
복리후생비	43,000	
의료사회사업비	93,380	· 치료지원 사업비 · 퇴원연계 대상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사업비 · 건강 취약계층 방문진료·방문서비스 운영비 · 방문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대상자 자조모임 운영비 ·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건강강좌) 운영비 · 건강포스터 및 교육자료 제작

▶ 셔틀버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외주용역비	300,000	·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 4대

▶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리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리스료	500,000	· CT 장비 리스 1식

「민간위탁사업비」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2,597,844	
의료 장비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2,297,844	· 응급실 CT 외 6점
	서남병원 위탁 운영 관련	300,000	

▶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건물	670,000	· 바닥 및 벽체 균열 보수 등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274,230	
기타무형자산	228,800	· 환자동의서작성솔루션(SW)
공기구 비품	45,430	· 태블릿 모니터, 모바일 태블릿, 서버 스토리지 등

▶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124,430	· 방화벽 2식, 웹방화벽 1식

▶ 디스플레이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400,000	· 디스플레이, 영상송출장치, 디지털믹서 등 개선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62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나.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중
- 다. 현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25.8.2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시설물 운영·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 시설규모 : 대지 11,189.40 m^2 , 건물 39,262.5 m^2 (지하4층, 지상8층)
- 지원시설 :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
- 개원일자 : 2011년 5월

	· 종별 : 종합병원 · 층고 : 지하4층, 지상8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재활의학센터 등 - 병동부 :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 의료정보통합시스템 : EMR, PACS, OCS
---	--

마. 민간위탁기간

- 2025년 8월 27일 ~ 2030년 8월 26일(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8,955,570천원('25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본예산, 천원)

구 분	'24년도 예산	'25년도 예산
합 계	11,458,272	8,955,570
민간위탁금	8,894,174	4,889,463
공공의료 손실보전	8,132,418	3,635,000
건강돌봄 네트워크	425,756	454,463
셔틀버스 운영	300,000	300,000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리스	-	500,000
노후설비부속교체	36,000	-
민간위탁사업비	2,564,098	4,066,107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	980,038	2,597,844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	670,000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	274,230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	124,033
디스플레이 설치	-	400,000
식당 노후환경개선 공사	167,500	-
입원환자용 냉장고 교체	22,000	-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1,374,560	-
노후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 교체	20,000	-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직담당관-2384, '25.3.7.) : 적정(권고)

- (권고내용)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시에도 진료인력 및 진료서비스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 (대 책) 수탁기관 적격자심의 시, 고용유지·승계 정도를 포함하여 평가

· 고용유지·승계 정도 80% 이상 의무

·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기준,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 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이숙종 (☎ 2133-9248)

붙임 1

- 산출근거

「민간위탁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공의료손실보전	8,507,000	7,927,000	8,269,296	8,132,418	3,635,000

▶ 건강돌봄 네트워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454,463	
인건비	318,083	· 간호사(4명), 사회복지사(2명)
복리후생비	43,000	
의료사회사업비	93,380	· 치료지원 사업비 · 퇴원연계 대상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사업비 · 건강 취약계층 방문진료·방문서비스 운영비 · 방문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대상자 자조모임 운영비 ·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건강강좌) 운영비 · 건강포스터 및 교육자료 제작

▶ 셔틀버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외주용역비	300,000	· 서남병원 셔틀버스 운영 4대

▶ 전신용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리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리스료	500,000	· CT 장비 리스 1식

「민간위탁사업비」

▶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2,597,844	
의료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2,297,844	· 응급실 CT 외 6점
장비	서남병원 위탁 운영 관련	300,000	

▶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건물	670,000	· 바닥 및 벽체 균열 보수 등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 노후 환자동의서작성시스템 교체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계	274,230	
기타무형자산	228,800	· 환자동의서작성솔루션(SW)
공기구 비품	45,430	· 태블릿 모니터, 모바일 태블릿, 서버 스토리지 등

▶ 노후 방화벽 교체 및 웹방화벽 도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124,430	· 방화벽 2식, 웹방화벽 1식

▶ 디스플레이 설치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 내역
공기구 비품	400,000	· 디스플레이, 영상송출장치, 디지털믹서 등 개선